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 1.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목 차 -

1. 목적	1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1
나. 적용 범위	2
다. 용어의 정의	2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5
나. 사업추진 체계	5
다. 사업추진 절차	6
라. 책무	7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7
나. 심의위원회 운영	9
다. 심의사항	10
5.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11
1) 공고대상	12
2) 공고방법	12
3) 보조금 지원 범위	12
4)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13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14
다. 관리번호 부여	16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절차	16
나. 사전검토(서류검토)	16
다. 사전검토(현장실사)	17
라. 지원업체 선정	18
마. 지원업체 확정	18
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보	19

7.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가. 협약 금액 확정	19
나. 협약 체결	19
다. 협약 변경	20
라. 협약 해지	20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21
나. 보조금 선금 지급	22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22
라. 상황보고	23
마. 설치확인	23
바. 보조금(잔금) 지급	24
사. 총 사업비 정산	24

9.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취득설비의 관리	25
나. 취득설비 처분의 제한 등	26
다. 사후관리	26
라. 사고의 보고	26
마. 소유권 이전	27

10.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가.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결정	27
나. 보조금 환수	28
다. 참여제한	29
라. 제재 절차 및 이의신청	30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30

11. 시행일

31

[부록]

[부록1]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32
[부록2] 선정평가 기준	35
[부록3] 제재 기준	36
[부록4] 지원설비 표식	38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39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4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45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포기 사유서	46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47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업체 평가표	49
[별지 제8호 서식]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50
[별지 제9호 서식] 협약서	51
[별지 제10-1호 서식] 협약 변경 신청서	55
[별지 제10-2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 통지서	56
[별지 제11-1호 서식] 협약 해지 신청서	57
[별지 제11-2호 서식] 협약 해지 승인 통지서	58
[별지 제12호 서식] 착수신고서	59
[별지 제13-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60
[별지 제13-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62
[별지 제14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63
[별지 제15호 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64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기간 변경 사유서	66
[별지 제17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67
[별지 제18호 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69
[별지 제19호 서식] 정산보고서	70
[별지 제20호 서식] 이의신청서	71
[별지 제21호 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72
[별지 제22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73
[별지 제23-1호 서식] 재산 처리 신청서	74
[별지 제23-2호 서식] 재산 처리 승인 통지서	75
[별지 제24호 서식] 사고보고서	76
[별지 제25호 서식] 제재통지서	77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78
[별지 제27호 서식] 청렴 서약서	79
[별지 제28호 서식] 서면(비대면) 결의서	80

1. 목적

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 운영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지급 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1)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적용 범위

- 1)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용어의 정의

- 1) “운영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특정 부분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3) “신청업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지원업체”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업체 선정평가 등을 거쳐 참여가 확정된 업체로서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5) “사업수행업체”란 지원업체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견적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설비제조·시공업체를 말한다.
- 6) “심의위원회”란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업체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현장실사 검토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집행 등의 문제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대상 및 범위, 기타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7) “지원업체 선정평가”란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 8) “사전검토”란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위해 신청업체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9) “현장실사”란 신청서(첨부서류 등)에 근거하여 신청업체의 기본 정보 및 신청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10) “현장평가”란 지원설비 개선완료서에 근거하여 지원업체의 현장과의 일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11) “현장조사반”이란 공단 유사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구성(1인 이상)하여 지원업체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의 현장실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2) “협약”이란 공단과 지원업체 대표가 협약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13) “협약기간”이란 공단과 지원업체와의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협약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를 포함한다.
- 14) “사업기간”이란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기간이며, 사업종료일은 정산보고가 완료되는 당해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 15) “지원대상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상 명시되어 있는 취급시설로 본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록1]의 1호와 같다.
- 16) “지원항목”이란 각 지원대상 시설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부록1]의 2호와 같다.
- 17)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개선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8)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 19) “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원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20) “사업비”란 시설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자부담금과 보조금의 합계를 말한다.
- 21) “총 사업비”란 사업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를 말한다.
- 22) “원가계산서”란 협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공사)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작성된 계산서를 말한다.
- 23) “협약금액”이란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 보조금을 말한다.
- 24) “선금”이란 지원업체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협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 25) “정산”이란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를 토대로 하여 지원업체가 사업수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6) “사후관리”란 지원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3년간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7) “이의신청”이란 공단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 28) “환수”란 지급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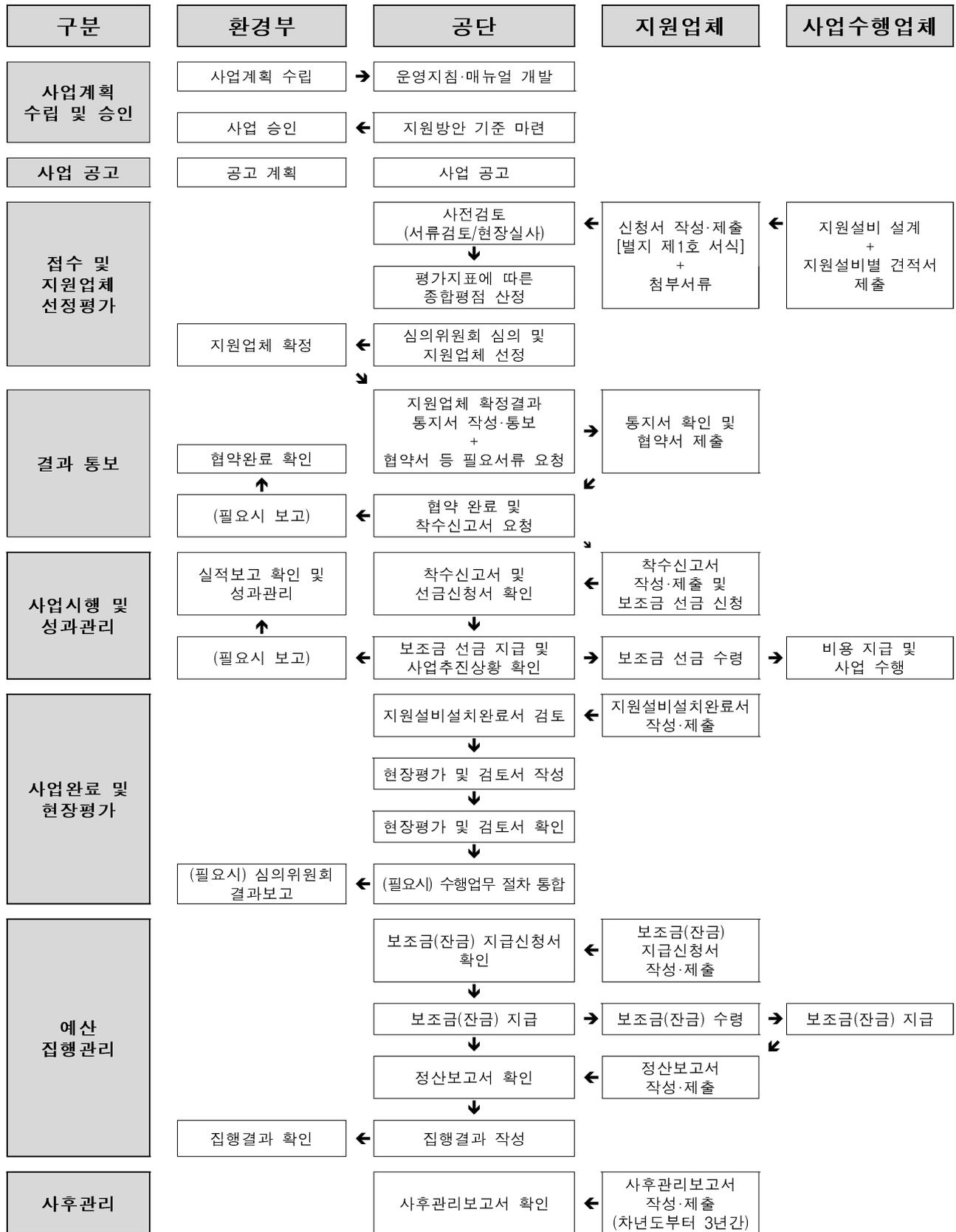
- 1) 지원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업체에서의 화학사고를 예방한다.

나. 사업 추진 체계



- 1) 총괄기관 :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 2) 운영기관 : 지원사업 추진·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3) 심의위원회 :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4) 지원업체 :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보고
- 5) 사업수행업체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설치 및 장비 제공

다. 사업 추진 절차



라. 책무

- 1) 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관 요청 시 집행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내용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역무대행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지원업체는 설비개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4)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 1) 공단은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업체 선정 등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이 확인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협회 등 포함)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리자급 이상

나) 연구계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다)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 라) 공무원 : 본 사업 관련 담당관
 - 마) 유관기관 : 유사사업 운영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리자급 이상
 - 바)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공단은 분야별 전문가(환경, 화학, 안전, 보조금 등)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 4)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가) 위원 또는 그 친족(배우자 포함)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라)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마)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신청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5)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6) 공단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7) 공단은 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 운영

- 1) 위원회의 구성 명단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서면 및 비대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가) 2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지 제28호] 서면·비대면 위원회 동의서 서식에 따른다.
 - 나) 2항에 따른 비대면(화상)심의의 경우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다) 서면 및 비대면 심의·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하여 간사는 결과를 취합한다.
- 3) 공단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5) 공단은 소속 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6) 공단 및 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통해 알게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가) 참석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27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심의사항

- 1)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 가)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서 검토·평가(보조금의 적정성, 우선순위 결정 등)
 - 나) 현장실사 검토서
 - 다)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검토 및 선정
 - 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과 보조금 지급 결정의 변경
 - 마) 사업 완료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검토
 - 바) 사후관리 결과 검토
 - 사) 사업비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 아) 그 외 공단이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은 ‘제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가) 보조금 환수

나) 사업참여 제한

다)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라) 사안의 경중에 따른 고소·고발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그 외 공단이 지원사업의 제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사업광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광고

1) 환경부와 공단은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나) 사업추진체계

다)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범위

라) 신청방법

마) 지원업체 선정 절차

바) 평가방법

사) 추진일정

아) 사후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자)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고 대상

1) 신청업체 자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중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업체

2)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은 [부록 1]과 같다.

□ 공고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중 당해 연도 잔여 예산 내에서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공고 기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와 협의한다.

□ 보조금 지원 범위

1) 보조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지원업체별 4천2백만원이며, 지원항목별 시설 개선비의 최대 70%로 산출(천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

나)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다) 기존 시설을 철거만 하는 경우

- 라) 단순용량 증대 (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 마)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 바)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사) 중고·재생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업체에서 제외한다.

- 가) 지원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이 진행(예정) 중인 경우
- 나)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다)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라) 지원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마)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 바) 현재(공고일 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취급시설 등(※단, 5인미만 사업장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5인이상 사업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항목의 개선명령 받은 경우 지원가능)

- 사)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 아)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자)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단, 타 보조금 수급이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보조금을 수령 받은 경우
 - 나) 해당설비에 대해 타 기관의 보조금을 수령 받은 경우, 타기관 보조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 다)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 1) 신청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 기한까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별지 제1호 서식]
 - 나)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라)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2) 신청업체는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각 1부를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업체는 해당하는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업태 또는 종목이 하나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가스기기,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라) 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마) 계측기, 과학기기 설치 및 도소매

바) 통신설비,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사) 그 외 공단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4) 신청서류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업체가 접수가 완료된 신청을 공고 마감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기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동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선정한다. 신규 신청규모가 보조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정 이력이 있는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선정할 수 있다. 단, 과거 보조금 수급 이력이 있는 동일시설 내 동일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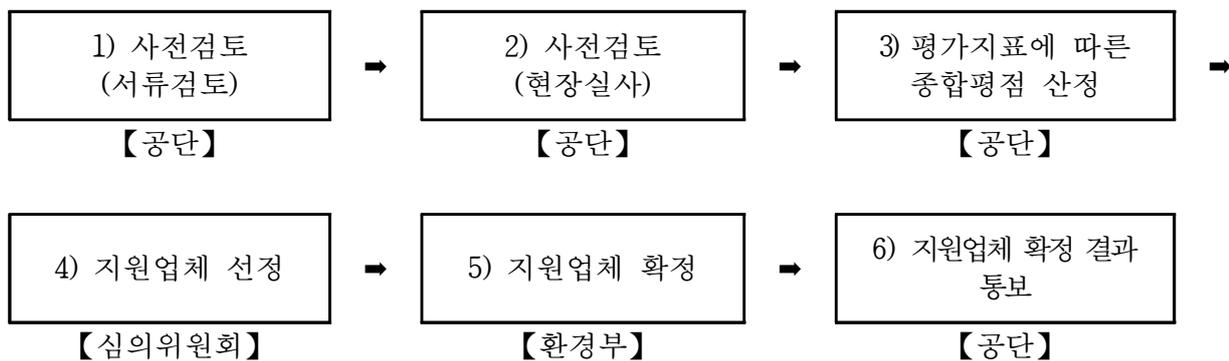
다. 관리번호 부여

- 1) 공단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지원업체 선정 후에도 동일 관리번호로 관리한다.
- 2) 관리번호는 “E-연도-A-일련번호(4자리)” 와 같이 부여한다.
- 3) 당해 연도 추가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신청의 관리번호는 B, C, D 의 순서로 추가하여 관리한다.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절차

- 1) 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사전검토(서류검토)

- 1) 공단은 신청업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 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해당 여부
 - 다) 신청 자격의 적절성
 - 라) 보조금 지원 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마) 기타 신청 내용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 공단은 사업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자격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3) 공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전검토(현장실사)

- 1) 공단은 신청업체별로 공단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단,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현장실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현장실사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현장실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합성을 심의한다.
- 3) 현장실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현장실사 시 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업체 대표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 사업 담당자가 대신 할 수 있다.
 - 나) 현장실사는 신청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현장실사시 신청서 오기입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용량, 단위, 대수를 수정할 수 있다.
- 4) 공단은 현장실사 후 조사결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라. 지원업체 선정

- 1) 공단은 선정평가 기준 [부록 2], 평가지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가)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2)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 3) 동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만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신청업체 중 선정평가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업체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4) 당해연도에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중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공고 없이 기존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마. 지원업체 확정

- 1) 환경부는 공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지원업체를 확정한다.
- 2) 공단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차순위 지원업체를 확정한다.
가) 지원업체가 협약을 포기한 경우
나) 공단이 지원업체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다) 당해연도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경우
라) 그 외 특정한 사유로 인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보

- 1) 공단은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업체에 통지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7.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가. 협약 금액 확정

- 1) 선정된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적절성을 위하여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 2) 공단은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금액을 최종 협약금액으로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나. 협약 체결

- 1) 공단과 지원업체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청할 수 있다.
- 3) 지원업체가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포기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약 변경

- 1) 지원업체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단에 협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가) 지원업체명, 지원업체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3) 공단은 지원업체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원업체에게 그 결과를 협약 변경 승인 통지서[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라. 협약 해지

- 1) 지원업체가 협약체결 후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1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검토 후 협약 해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2) 공단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중지, 현장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업체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협약 해지는 협약 해지 승인 통지서[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협약 해지를 통지한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라)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마) 공단의 승인없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바) 사업수행업체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 천재지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 지원업체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카) 착수신고서, 지원설비설치완료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타) 기타 정책상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 4) 다만, 공단은 지원업체가 해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 1)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금 지급을 신청한 지원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금금보증보험에 가입, 선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원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만 가입하여 발급된 보증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선금 지급

- 1) 선금은 협약 시 결정된 보조금(사업주 자부담금 제외)의 70% 이내에서 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는 보조금통합포털 사용 절차에 따른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 1)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13-1호 서식]에 따라(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용량, 대수, 위치에 한함) 변경
 - ※ 지원항목 변경 불가. (ex. 배관 및 관련설비 → 방류벽 등)
 - 나) 사업비 변경(지원항목별 정부보조금의 협약금액대비 상승 제외)
 - 다) 사업수행업체 변경
- 2) 착수신고 이전의 사업수행업체 변경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변경이 없는 사업비 변경은 착수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단, 용량, 대수 변경 시 정부보조금도 일정 비율로 감소될 수 있다.)
- 3) 공단은 변경신청서에 대해 검토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별지 제13-2호 서식]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라. 상황보고

- 1)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마. 설치확인

- 1)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 등의 법규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를 완료하고,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는 해당연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합당한 사유로 설치 완료가 불가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후 사업기간 변경 사유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단은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를 검토하고, 설치 확인을 위해 공단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가) 설비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의 내용(설비사양 등)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나) 설치된 설비에는 [부록 4]의 지원설비 표식을 부착
 - 다) 현장평가 검토서[별지 제17호 서식] 작성 (필요시 지원업체에 추가서류 요청)

- 4) 공단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중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설비의 철거 및 분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보조금(잔금) 지급

- 1)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금을 신청한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을 통해 보조금 잔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보조금통합포털 사용 절차에 따른다.
- 3) 공단은 현장평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없이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미지급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사. 총 사업비 정산

- 1)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 3) 공단은 지원업체에서 집행한 총 사업비 등을 확인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지원업체는 즉시 공단의 지정된 계좌(보조금 입·출금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4) 미반납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 5) 지원업체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검토 결과를 지원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6) 공단은 정산 및 환수 결과를 보조금 집행 계획 및 실적 보고 시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취득설비의 관리

- 1)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1부를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원업체가 취득설비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4)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취득설비 처분의 제한 등

- 1) 지원업체가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리 신청서[별지 제2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공단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업체에 그 결과를 재산 처리 승인 통지서[별지 제23-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 3) 지원업체가 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공단은 보조금의 일부(사용기간 비율적용)를 환수할 수 있다.

다. 사후관리

- 1) 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지원업체의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설비현황, 설치연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공단은 현장조사 방법·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3)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라. 사고의 보고

- 1) 지원업체는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취득설비에 한하여 업무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2)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 취소 등 조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전

- 1)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2)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의 권리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0.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가.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결정

- 1) 공단은 동 사업에 있어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극히 불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록 3]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추가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 2) 공단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 승인 후 대상 업체에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 3) 사업 참여제한의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 4) 지원업체는 보조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라. 제재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공단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조금 환수 및 신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보조금 환수

- 1) 공단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기준[부록 3]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나)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다)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라)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등의 사항에 불응한 경우
 - 바)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아)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2) 공단은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금액을 청구하여 확보할 수 있다. 보조금 환수 조치 후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참여제한

- 1) 공단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기준[부록 3]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나)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라)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마)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바)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등의 사항에 불응한 경우
 - 자) 협약체결 이후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차)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타) 그 밖에 심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2) 공단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재 절차 및 이의신청

- 1) 공단은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의 필요성, 제재의 종류·수준 등 제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대상 업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3)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공단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8) 동일한 사유의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 1)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가) 동 사업의 신청서 내용과 시설개선 자료를 취급하는 자
 - 나) 현장조사반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 다)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라) 그 외 시설개선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 3) 공단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는 비밀 준수 서약서[별지 제26호 서식]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현장실사 및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1.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록1]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1.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범위

시설 구분		지원항목 적용 범위							
A	제조·사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⑪	⑫	⑭	⑮	⑰			
B	실내 저장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C	실내 보관시설	①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⑰	⑱					
D	실외 저장시설	①	②	④	⑥	⑦	⑧	⑨	⑪
		⑫	⑬	⑭	⑮	⑯	⑰		
E	실외 보관시설	①	④	⑥	⑦	⑨	⑩	⑰	⑱
F	지하 저장시설	①	②	④	⑥	⑦	⑨	⑪	⑫
		⑬	⑭	⑮	⑯	⑰			
G	차량 운송시설	⑬	⑱						
H	차량 운반시설	⑱							
I	사외배관 이송시설	⑫	⑭	⑱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적용 범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및 관리기준의 세부지침 내용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정하였음.

2. 지원항목 및 세부 내용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①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지 및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비상용 조명 등) 설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미리 감지해 위해를 예방하고 정전 시에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비상전력 설비 설치(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등 연결되는 비상용 설비)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사고대응체계 구축(유·누출 모니터링 등)
②	배관 및 관련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 및 관련설비(용수배관, 스팀배관 등 비유해화학물질 설비 제외)
③	환기·배출설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의 설비, 윌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④	잠금·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상시 잠금상태 유지 가능한 자물쇠 등)
⑤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스크러머, 송풍기 등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외)
⑥	긴급세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 설치(샤워시설 포함)
⑦	정전기 제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접지, 피뢰침 설치 등) (단, 기습기의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 필요)
⑧	방류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
⑨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 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⑩	외부유출방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의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⑪	취급시설 바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등의 성능 유지, 보수 (도료-내산페인트, 에폭시 등)
⑫	추가안전관리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안전관리방안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 구비 (기울기 측정기, 배관두께 측정기)
⑬	저장탱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 이설 ·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⑭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이송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준수 및 유지·보수 (이동형 펌프로의 교체는 지원제외)
⑮	통기밸브 및 화염방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압이나 진공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자 배기나 흡기를 위한 통기관 설치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⑩	주입구 및 관련 설비	· 탱크로리 등 운송시설로부터 저장시설로의 입고를 위한 주입구 및 관련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주입구함 설치, 누액받이 설치 등)
⑪	보관시설 구분 및 구획 보관	· 보관시설의 물질 특성별 구분 및 구획 보관을 위한 설치 (선반 등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을 계산한 내안전성 자료 포함)
⑫	계측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계측장치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 · 과충전으로 인한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 · 유해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⑬	운반차량 적재함 및 차고지	·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적재하나 하역할 때 넘어짐 등으로 인해 충격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설치 · 사업장 소유지 내 차고지의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반차량 차고지의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⑭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개선하지 않으면 화학사고와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단, 심의위원회에서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심의결과 제외될 수 있음)

※ 지원항목 적용 범위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 6, 8~10, 12, 36~40호」(취급시설 유형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선설비에 대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외 또는 환수

(참고) 육안 확인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개선 필요성			비고
		필요	불필요	해당없음	
물리적 상태	구조적 결함 (균열, 변형, 누수 등)				
	설비 외관 상태 (녹, 부식, 열화 여부 등)				
설비 및 장비의 성능	기능 저하 여부 (설계 성능 발휘 여부)				
	주요 장비 (펌프, 밸브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누출 여부 (배관 연결 부위, 저장 탱크 등)				

[부록2] 선정평가 기준

1.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 업체 현황 (100)	노후도 (20)	- 대상 설비 설치년도 ※ 설비가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
	영세성 (30)	- 근로자수 ※ 공고시점 이후에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15
		- 업체 규모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해당여부 확인	15
	위험도 (15)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既往외영향평가서) 위험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나,다)/장외영향평가서(고,중,저) ※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	15
	입지 (10)	- 산업단지 내/외 ※ 산업단지 입지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10
	투자 의지 (15)	- 사업비 규모 ※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15
	사업효과성 (10)	- 지원대상 시설의 지원항목 ※ 화학사고 예방 목적으로 개선 또는 교체하는 지원항목에 높은 점수 부여 ※ 2개 이상 지원항목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는 높은 평점 부여	10
계			100

2. 사업효과성 내용(화학사고 예방과 확대 방지)

목적	지원항목	목적	지원항목
화학사고 예방	② 배관 및 관련설비	화학사고 확대 방지	①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③ 환기·배출설비 개선		⑥ 긴급세척시설
	④ 잠금·보안설비		⑧ 방류벽
	⑤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⑨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⑦ 정전기 제거설비		⑩ 외부유출방지설비
	⑫ 추가안전관리 측정장비		⑪ 취급시설 바닥 관련
	⑬ 저장탱크		
	⑭ 펌프 등 유체이송장치		
	⑮ 통기밸브 및 화염방지기		
	⑯ 주입구 및 관련 설비		
	⑰ 보관시설 구분 및 구획보관		
	⑱ 계측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⑲ 운반차량 적재함		
⑳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부록3] 제재 기준

1. 제재 기준

구 분	제재 사유	기준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input type="checkbox"/>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input type="checkbox"/>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2년	-
	<input type="checkbox"/>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
	<input type="checkbox"/> 지원업체·사업수행업체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면제	-
협약 위반	<input type="checkbox"/> 공단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폐업, 이전, 명의변경 등의 사유도 공단에 사전 보고가 없는 경우 해당됨	1년	환수(사용기간 비율적용)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1년	환수(사용기간 비율적용)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사항에 불응한 경우	1년	환수(사용기간 비율적용)
	<input type="checkbox"/>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환수(사용기간 비율적용)
	<input type="checkbox"/> 부적정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전액 환수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
	<input type="checkbox"/> 협약체결 이후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
성실 위반	<input type="checkbox"/>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년	환수(사용기간 비율적용)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2. 보조금 환수비율

대상품목	사용기간	보조금 환수비율
전품목 (사후관리기간 3년 기준)	당해연도 내*	100%
	3개월 이내**	90%
	3개월 ~ 1년	70%
	1년 ~ 2년	50%
	2년 ~ 3년	30%

*설비를 설치한 해 기준

**설비를 설치한 다음 해, 사후관리기간 시작일 기준

1.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2. 사업장이 이전·폐업하는 경우 공단에 이전·폐업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등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의 경우 적정 관리 시 보조금 미환수

[부록4] 지원설비 표식

지원설비 표식

□ 장방형 규격: 가로 70mm 내외, 세로 50mm 내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설비

이 설비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은 설비로서 임의 매각, 대여, 폐기 및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2000.0~2000.0 (설치일로부터 3년)

한국환경공단

㉔

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예시)

□ 시설 및 지원항목(현재기준)

우선 순위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개선방법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 증빙여부	현장 사진
1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방류벽 노후화 개선	10m ³	개	1	1998년		1장
2	지하저장시설	황산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유지·보수	-	-	-	-		1장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은 예시 및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행추가’ 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계획서

개 선 내 용 및 개 선 목 적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황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도모 ○ 황산지하저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황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도모
개 선 사 업 추 진 내 용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방류벽 보수공사를 위해 보강 시멘트 작업 및 우레탄 방수 처리 추진 ○ 황산지하저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설치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황산 최소화에 따른 2차 사고 예방효과 ○ 황산지하저장시설-적재하역장소 작업환경 개선 및 탱크로리 상하차구역 입출고 시 안전성 확보에 따른 2차사고 예방효과
기 존 설 비 처 분 계 획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기존 설비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첨부예정) ○ 황산지하저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신규설비 설치로 해당사항 없음

□ 지원항목별 건적 입력(개선계획)

(VAT제외한 금액입력, 단위: 천원)

시설 구분/시설명/지원항목	개선 방법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업체명	견적금액	보조금	자부담금	비교견적금액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방류벽 노후화 개선		10m ³	개	1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유지· 보수		-	-	-					

라

개 선 계 획 총 괄 내 역 서(예시)

□ 총괄표

우선 순위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 업체명	전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 / ㈜OO	10	m ³	1	㈜OO	41,720
2	지하저장시설	황산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 / ㈜OO	-	식	1	㈜OO	4,000
3				-					
4				-					
합 계									45,720

□ 종합내역서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고
사업비 [100%] (C=A+B)	45,720	
정부보조금 [70%] (A)	32,000	※ 최대 4,200만원 한도
자부담금 [30%] (B)	13,720	
VAT (사업비의 10%)	4,572	(지원대상 아님)

(필수 제출)

1. 지원대상 시설의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4.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既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必)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1. 영업허가증 1부(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한함)
2. 산단입주계약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 한함)
3. 기타 추가 서류(해당 시)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 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정산 자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사업운영 위탁대행업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연계사업 지원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②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관리번호	
------	--

현장실사 검토서

업체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내()	<input type="checkbox"/> 외	
소재지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시설 및 지원항목

No	현재 기준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설비번호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증빙
1									
2									

No	개선 계획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설비번호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업체	견적금액
1									
2									

검토1) 신청서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과의 일치여부(사업장 기본정보 및 신청정보 등)

일치	불일치	내용

검토2) 육안 확인에 따른 개선 필요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내용

검토3) 현장실사 의견

현장실사일		20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대표자	소속	
①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검토자	소속				
②	성명	(인)			

관리번호	
업체명	

현장 사진(설비 설치 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 첨부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업체 평가표

관리번호	
------	--

신청업체 평가표

기본정보

사업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평가일	
업체명	

업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득점	
		2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노후도	①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년도(20) ※중빙 자료 등이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	18	16		-	
영세성	② 근로자수(15)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5인 미만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
		15	14	13	12	11	
	③ 업체규모(15)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5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 해당여부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15		13	11		
위험도	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나,다)장외영향평가서(고,중,저)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	가(고)	나(중)	다(저)	그 외	-	
		15	13	11	9		
입지	⑥ 입지-산업단지 내/외(10) ※산업단지 입자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	
		10		5			
투자 의지	⑦ 총 사업비 규모(15) ※자부담금이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	
		15	13	11	9		
사업 효과성	⑧ 지원대상 시설의 지원항목(10) ※화학사고 예방 목적으로 개선/교체할 경우, 높은 평점 부여 ※2개이상 지원항목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는 높은 평점 부여	화학사고 예방시설		화학사고 확대방지시설		-	
		2개이상	1개이하	2개이상	1개이하		
		10	8	6	4		

합계(총점)	
--------	--

[별지 제8호 서식]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관리번호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업체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지원업체 현황

지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조금 신청금액(원)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신청금액	
								조정 전	조정 후
1									
2									
3									

※ 필요시 셀추가 수정 가능

지원조건

-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착수신고, 정산보고, 사후 관리 보고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다.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변경 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 라. 기타 지원조건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9호 서식] 협약서

관리번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명)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당사자	한국환경공단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약 내용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No</th> <th>시설 구분</th> <th>시설명</th> <th>지원 항목</th> <th>모델명/제조사</th> <th>용량</th> <th>단위</th> <th>대수</th> <th>지원항목별 협약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항목별 협약금액	1									2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항목별 협약금액																											
	1																																			
	2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협약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비 [100%] (C=A+B)</td> <td></td> <td></td> </tr> <tr> <td>정부보조금 [70%] (A)</td> <td></td> <td>※최대 4,200만원 한도</td> </tr> <tr> <td>자부담금 [30%] (B)</td> <td></td> <td></td> </tr> <tr> <td>VAT(사업비의 10%)</td> <td></td> <td>(지원대상 아님)</td> </tr> </tbody> </table>								항목	협약금액	비고	사업비 [100%] (C=A+B)			정부보조금 [70%] (A)		※최대 4,200만원 한도	자부담금 [30%] (B)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항목	협약금액	비고																																		
사업비 [100%] (C=A+B)																																				
정부보조금 [70%] (A)		※최대 4,200만원 한도																																		
자부담금 [30%] (B)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협약 기간	협약일 ~ 년 월 일(사후관리기간 포함)																																			
사업 기간	협약일 ~ 년 월 일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 부터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가 사업종료일(당해연도 11.30.)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리 신청서[별지 제23-1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단의 승인없이 3년 이내에 취득설비를 양도·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_____ (인)

(지원업체명) 대표이사
_____ (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내용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 라 한다)’ 는 지원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시설 개선에 대해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이라 함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지원항목을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 ③ 협약기간은 확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설비의 준공)

- ① 지원업체는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지원사업의 준공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의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 ① 한국환경공단은 설비 개선 후 지원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3.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환수)

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 ③ 지원업체는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 ④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업체의 상황보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실적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통보한 경우 지원업체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총 사업비 정산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총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대상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지침에 따라 협약 변경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라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제재 사유에 따라 지원업체에게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협약 목적)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제2조(협약 범위)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된다.

제3조(협약 책임)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서에 명시된 제품, 시공 상 안전 및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별지 제10-1호 서식] 협약 변경 신청서

관리번호

협약 변경 신청서

기본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협 약 금 액 (정부보조금)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사업수행 업체명
1				
2				
3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지원업체명		
	<input type="checkbox"/>	지원업체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주소(사무소,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세부사유서 및 기타 증빙자료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0-2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협약 변경 승인 통지서

기본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협약 금액 (정부보조금)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사업수행 업체명
1				
2				
3				

승인 사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11-2호 서식] 협약 해지 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협약 해지 승인 통지서

기본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협약 금액 (정부보조금)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사업수행 업체명
1				
2				
3				

해 지 사 유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㉔

변경세부내역

□ 변경내역 상세

--

□ 변경사유

--

□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부서류	비고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내역	□ 변경 계약서 및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설비사양서 등)	*변경신청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명세 작성
	□ 변경 전/후 현장 사진	*설치위치 변경
사업비 변경	□ 견적서 및 내역서	
사업수행업체	□ 변경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별지 제13-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기본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항목
1					
2					
3					
협 약 금 액 (정부보조금)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승 인 내 역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변경 (용량, 대수, 위치 限)		
	<input type="checkbox"/>	사업비(정부보조금)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수행업체 변경		

위와 같이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15호 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관리번호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지원정보

지원업체명						설치장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사업계획변경여부		O / X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금액(천원)			사업수행 업체명
									협약	착수	준공	
	1											
	2											
3												

총 사업비(단위 : 천원)

구 분	협약 금액	착수 금액	준공 금액	비고
사업비 [100%] (C=A+B)				
정부보조금 [70%] (A)				※최대 4,200만원 한도
자부담금 [30%] (B)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착수연월일 : 20 년 월 일

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 첨부
1. 설비준공확인서 등 설치완료 증빙서류
 2. 설치 후 배치도 및 설치도면
 3. 현장 설비 설치 사진
 4.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해당 시)
 5. 기존설비 철거 및 처분 증빙자료(해당 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관리번호	
업체명	

현장 설비 설치 사진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관리번호	
------	--

현장평가 검토서

업체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내()	<input type="checkbox"/> 외
소재지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제조사/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제조사/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1											
2											
3											

검토1) 개선 완료와 현장 확인 일치여부(지원설비 개선완료서와의 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내용

검토2) 기존설비의 철거 및 분해 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내용

검토3) 설비의 구조, 고정, 이격거리, 재질 등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내용

현장실사일 20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대표자	소속	
①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검토자	소속	
②	성명	(인)

관리번호	
업체명	

현장 사진(설비 설치 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내에서만 추가 첨부 가능

[별지 제25호 서식] 제재통지서

		관리번호						
제 재 통 지 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처 분 대 상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대수	집행금액 (천원)	환수비용 (천원)
	1							
	2							
	3							
제재내역								
제재사유								
<p>「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제재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p>								

[별지 제28호 서식] 서면(비대면) 결의서

심의위원회 서면(비대면) 결의서

안 건 명 :

제안이유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 안전에 대해 서면(비대면)으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동 의 여 부		서 명 (인)	기타의견
	찬 성	반 대		